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2일, 고영찬 의원, 도병우 의원  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 회부  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  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등(안 제5조)
- 사업 시행 및 예산 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- 청렴도 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 및 제9조)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포상 등(안 제10조 및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동 제정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 - 안 제2조에서는 ‘공직자등’과 ‘부패행위’의 정의에 대하여,
  - 안 제3조에서는 ‘구청장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’라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,
  - 안 제4조에서는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에 대하여,
  - 안 제5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매년 수립·시행과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,
  - 안 제6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폐방지를 위한 사업내용에 대하여,
  - 안 제7조에서는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하여,
  - 안 제8조에서는 청렴도 설문조사 등에 대하여,
  - 안 제9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폐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,

- 안 제10조에서는 제6조의 사행시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하여,
  - 안 제11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에 관해 우수 부서 및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 청렴도 평가,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,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부서 및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
  - 참고로 동대문 등 서울시 10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
  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략

**5. 토론요지** : 생략

**6. 심사결과** : 원안가결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음